

보상계획 열람공고

전원개발에 관한 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95호 (2016.05.30)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신제천-신영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(보상)사업에 편입되는 토지(소유권 또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)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『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10월 17일

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



1. 사업명 : 345kV 신제천-신영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(보상)사업
2. 사업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 사장
3. 사업의 목적 :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,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.
4. 사업의 개요
 - 가. 선로길이 : 7.27km
 - 나. 필지수 : 199필지
5. 사업시행의 기간 : 2016. 1. ~ 2019. 12. (48개월)
6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① 위치 : 경상북도 영주시, 장수면, 봉현면, 경북 예천군 상리면 일원
 - ② 면적 : 159,949m²
7. 보상대상 토지 등의 명세 :
 - 1) 예천군 상리면 초항리 : 309, 135, 136, 137, 138, 139, 140, 310, 311, 312, 313, 314, 315, 산51, 백석리 : 635, 636, 638-1, 640, 산20, 산22, 산24, 산26, 초항리 : 산52, 백석리 : 산8, 224-8, 239, 239-1, 240, 240-1, 246, 252, 산5, 산5-1, 203, 214, 215-1, 216-1, 216-10, 216-2, 216-5, 216-7, 216-9, 217, 218-10, 218-11, 218-2, 218-8, 222-1, 222-3, 222-4, 224-11, 산129, 산129-5, 42, 51, 52, 산120, 산121, 산127, 산128, 산130, 산122, 산122, 석포리 : 8, 9, 산10, 1, 산15-1, 봉현면 노좌리 : 산30, 산31, 520, 산33, 하촌리 : 산101, 노좌리 : 148-1, 511-10, 511-2, 511-3, 511-4, 511-5, 511-8, 512, 512-4, 516, 517, 518, 산38, 산39-6, 산39-8, 산37-4, 113, 114-2, 115, 116, 117, 124, 125-1, 125-2, 126, 127, 128-1, 136-1, 513, 89, 104-4, 104-5, 78, 78-1, 79, 79-1, 90-3, 91-1, 91-2, 91-4, 91-5, 92-1

, 92-2, 92-3, 92-5, 92-6, 94-4, 94-5, 94-7, 산3, 장수면 성곡리 : 967-1, 967-2, 967-3, 967-6, 산58, 857, 859, 862, 862-1, 산50-1, 산50-4, 산51, 산55-1, 655, 656, 845, 846, 847, 848, 849-1, 849-2, 659, 671, 672, 672-1, 673, 674, 675, 179, 180, 181-1, 182-1, 184, 195-1, 668-1, 668-2, 669-2, 697, 698-1, 698-2, 699-1, 699-2, 산37, 148, 149-2, 149-3, 149-4, 149-5, 산38-2, 산38-6, 갈산리 : 955, 산159-1, 산159-17, 산51, 성곡리 : 128, 129, 157-2, 갈산리 : 824, 825, 산158, 762, 782-1, 782-2, 1007-4, 1007-5, 564, 567, 산94, 산95-1, 산95-2, 414-1, 414-2, 415, 416-1, 419, 산100, 산96-4

8. 보상의 시기·방법 및 절차

- ① 보상시기 :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
- ② 보상금지급방법 :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
- ③ 협의장소 :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송전운영팀 또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장소
- ④ 협의방법 : 대면협의
- ⑤ 보상금산정 :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
- ⑥ 보상절차 : 보상계획열람공고→감정평가→보상금액 통보→계약체결 및 권리설정→보상금지급
- ⑦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: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, 『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9. 보상계획 열람

- ① 열람장소 : 해당 시·군·구 경제과
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송전운영팀(☎ 053-210-3841-6)
- ② 열람기간 : 2016. 10월 17일~2016년 11월 01일(16일간)

10. 기타사항 : 보상토지의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 통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